#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53

발의연월일: 2020. 9. 18.

발 의 자: 박상혁·강준현·김승원

김윤덕 · 김정호 · 김주영

서삼석 • 서영석 • 송옥주

오기형 • 윤준병 • 윤후덕

이규민・이정문・임종성

임호선 · 장경태 · 정일영

조응천・진성준・천준호

최인호·한병도·허 영

의원(24인)

# 제안이유

그간 교통 관련 법 체계와 정책이 주로 교통망의 효율적인 공급과 수송능력 확대 등 공급자 관점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최근 다양한 단 거리 이동수단의 등장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화되고 있는 개인 이 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성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한 지점에서 역, 버스 정류장 등 지역 내 주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 이동성이나 교통거점에서 목적지까지의 연계 이동성은 국민들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서, 기존의 교통시스템을 보완하면서 전반적인 교통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나, 현행의 교통 관련 법 체계에서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아울러, 교통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은 새로운 업종 및 수단, 서비스를 수용하고 육성·지원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궁극적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해 온 것이 사실임.

이에,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수송력 위주 거점 간 교통과 차별화된 이용자 관점의 지역 내이동성(모빌리티)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조성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모빌리티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되,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조사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 조사대상우선순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 모빌리티 조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시범사업 등 각종 모빌리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등 추진 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생활모 빌리티 활성화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성화대 책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 시행 자에게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을 시험·검증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정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수단・서비스 및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실제 교통에 접목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6조).
- 아.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등의 심의 의결,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선 권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모빌리티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등).

#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이동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모빌리티"란 지역 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이동성을 말한다.
  - 가. 한 장소에서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 이동성 나.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에서 다른 장소까지의 연계 이동성 다. 지역 내 서로 다른 장소 사이의 상호 이동성
- 2. "모빌리티 활성화"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 및 서비스 제공, 이에 필요한 유형 및 무형의 기반시설 개발·설치·운영 및 모빌리티 수단과 기반시설을 결합한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 모빌리

티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3.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자전거, 자동차 등 다양한 동력 또는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용 기기 및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을 모두 포함한 수단을 말한다.
- 4. "모빌리티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환승센터 등의 시설
  - 나. 전산 시스템 등 가목의 시설에 부속되거나 모빌리티 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유형·무형의 시스템, 시설 또는 공작 물
- 5. "모빌리티 조사"란 모빌리티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모빌리티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 현황과 지역의 모빌리티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6.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 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모빌리티 수단 연계형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운행 및 서비 스 제공에 따른 안전성 및 기반시설 연계 가능성 등을 검증하 기 위한 실증
- 나. 모빌리티 기술형 :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 등과 결합하여 국민의 모빌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기술의 실증
- 다. 모빌리티 서비스형 : 각종 모빌리티 수단·기술 등을 실제 교통체계에 접목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실증
- 라. 모빌리티 융합형 : 육상, 해상, 항공 등 이종(異種)의 공간을 하나의 수단 또는 서비스로 결합하거나, 서비스 간, 서비스와 기술 간, 기술 간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한 혁신적인 모빌리티 의 실증
- 마. 모빌리티 복합 서비스형 :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 등을 활용하여 모빌리티와 관광·의료 등 타 분야를 복합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의 실증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 7. "모빌리티 시범사업"이란 안전성 등 측면에서 검증된 모빌리티 수단·서비스 및 기술 등의 보급 확대, 모빌리티 기반시설 확충 등 실제 교통 생활 환경에 접목하여 이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민의 이동성 증진을 위한 모빌 리티 활성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모빌리티 시범사업 등에 관하 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공공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 제5조(전국 모빌리티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모빌리티 수단의 보급 및 서비스 현황
  - 2. 모빌리티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 3. 모빌리티 관련 기술 개발 동향
  - 4. 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 5. 지역별·교통축별·시간대별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 이용현황, 모빌리티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현황 및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국 모빌리티조사에 포함할 때에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 조사대상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정하고 이를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전국 모빌리티 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전국 모빌리티 조사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 여건 개선 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제5조의 전국 모빌리티 조사 결과 등을 토 대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이 경우 주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영향권역을 미리 설정하고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간적(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 범위에서 시간대를 정하는 경

- 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말한다) 범위
- 2. 지역별, 교통축별, 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 3.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 4. 추진체계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 · 운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효율적인 모빌리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제8조에 따른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자문을 구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모빌리티 개선사업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모빌리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5조에 따른 전국 모빌리티 조사
- 2.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 3. 제7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 4. 제9조에 따른 생활모빌리티 활성화대책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 5. 제12조에 따른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 6. 제15조에 따른 모빌리티 시범사업과 관련한 지원
- 7. 제17조에 따른 모빌리티위원회 운영 지원
- 8. 모빌리티 관련 창업 활성화
- 9. 모빌리티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10.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사업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모빌리티에 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 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⑥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생활모빌리티 활성화대책 수립 등)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 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 상의 개발사업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의 교통시설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 등 시행자"라 고 한다)는 사업구역 내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이동성 향상을 위하여 모빌리티 활성화대책(이하 "생활모빌리티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개발사업 등 시행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 등을 수립할

- 때 생활모빌리티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 등을 승인할 때 해당 생활모빌리티 활성화대책이확정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모빌리티 활성화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생활모빌리티 활성화대책을 생활모빌리티 활성화대책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생활모빌리티 활성화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생활모빌리티 활성화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등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개발사업 등 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고나 시정 요구에 따라야하며, 그 권고나 시정 요구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생활모빌리티 활성화대책 수립 범위,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의 신설, 확장 및 개량을 할 때에는 모빌리티 수단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모빌리티 수단의 예상통행량이 적거나 현지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장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 제11조(규제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

- 0일(제4항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 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모 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 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17조에 따른 모빌리티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모빌리티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모빌리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 1. 사업실시계획서
- 2.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 ⑦ 모빌리티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새로 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모빌리티위원회가

정한다.

- ①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모빌리티 수단·서비스 ·기반시설 및 기슬 등을 제공하는 자는 그 수단·서비스·기반시 설 및 기슬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2조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있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모빌리티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 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12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① 제12조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모빌리티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⑧ 제12조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 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2조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및 기술 등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③ 제12조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와 관련이 있는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모빌리티위원회에 보고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속히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
- 2. 제12조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수단·서비스 및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기존 교통체계의 효율성·공공성 저하로 모빌리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빌리티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 단체 또는 민간기업 등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모빌리티 데이터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간기업 등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빌리티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전산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또는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의2에 따른 교통박데이터플랫폼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 및 민간기업 등에게 제12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사업, 제16조에 따른 모빌리티 시범사업에 따라 발생한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전산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규제특례를 부여받

은 사업자 및 민간기업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 또는 연계를 요청받은 경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업비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용자가 모빌리티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 제4장 추진 체계

- 제17조(모빌리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모빌리티위원회를 둔다.
  - 1.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2.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 3.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모빌리티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모빌리티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

- 계 행정기관 및 시·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모빌리티위원회는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모빌리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모빌리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모빌리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되며,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 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및 정무직 공무원
  - 2. 모빌리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모빌리티위원회는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모빌리티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

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모빌리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모빌리티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 시행, 모빌리티 기반시설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20조(연구·개발 등) ① 국가는 모빌리티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 다.
  - ② 국가는 모빌리티에 관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 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는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 2. 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 4. 모빌리티 데이터 공유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는 모빌리티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모빌리티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장 벌칙

-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를 적용받은 자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자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8조에 따른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임직원
- 2. 제17조에 따른 모빌리티위원회의 위원
- 3.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